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정선군 규칙 제1246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89호 정선군의회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정선군 조례 제2390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정선군 조례 제2391호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54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4-93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57
- 정선군고시 제2014-9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67
- 정선군고시 제2014-97호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변경·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승인고시 69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4-802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공고 77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1월 5일

정선군 규칙 제124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제2조의2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음주운전”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성희롱”을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2조의2,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 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횡령· 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물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물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조의2, 제3조 및 제7조제2항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제2조의2 및 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제2조의2 및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정선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 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 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 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 ----- ----- ----- -----.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u><단서 신설></u>		1. ----- ----- <u>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u>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별표 4까지 적용

2.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3. -----

----- 별표 1부터 별

표 4까지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등 의결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을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
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훈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안행부령)의 개정을 반영한 안행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기준 추가(안 제2조제1항)
 -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 적용요건 추가(안 제2조의2)
-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요건 추가(안 제4조제1항)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인사위원회 징계사건 의결시 의견기재 사항 추가(안 제7조제2항)
 -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1월 5일

정선군 규칙 제1246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02조의 규정”을 “제10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위원을 해촉”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정된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6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소 계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추진 능력	소 계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5)	
	* 자치단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02조-----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따른 ----- ----- ----- ----- -----.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u>의하여</u>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u>의하여</u>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5.·6. (생략) 제4조(금고지정) ① (생략) ② <u>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u>의하여</u>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 ----- ----- 따라----- -----. 5.·6.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u>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③ ----- <u>따른</u>----- -----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생 략)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3. (생 략)

④ ~ ⑨ (생 략)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 -----

--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

--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
-----.

1. -----

----- 인정된 경우

2. ----- 그 밖의 -----
----- 없을 경우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013. 11. 22)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금고지정(안 제4조제2항)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
-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별표)
 - BIS 자기자본 비율을 총자본 비율로 변경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 내용을 반영

조 례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1월 5일

정선군 조례 제2389호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불편사항 해소와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선군수가 제출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

제2조제2호 중 “의정활동” 을 “의회의 직무수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회” 를 “군민(정선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의회” 로, “의정활동사항” 을 “의회 직무수행의”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민” 을 “군민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의회나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를 “위원장과” 로, “호선한다” 를 “서로 뽑는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위·해촉)” 을 “(위원의 위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단체 회원 6명
3. 전직 의회의원 15명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거짓 제보를 한 때

제4조제2항제2호 중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를 “않는 것으로 인정된 때”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병, 전출, 퇴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제1항 중 “3분의1” 을 “3분의 1”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요구 할” 을 “요구할” 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을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선군에서 군의회로 제출된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4. 군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u>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불편사항 해소와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선군수가 제출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 2. 의회의 직무수행----- 3. 군민(정선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의회 -- 의회 직무수행의 ----- 4. 군민의 ----- 5. 그 밖에 의회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각급 사회단체 회원 11명
3. 지역주민 9명

②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퇴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 서로 뽑는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회단체 회원 6명
3. 전직 의회의원 15명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거짓 제보를 한 때
2. ----- 않는 것으로 인정된 때
3. 질병, 전출, 퇴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회의) ① -----
----- 3분의 1 -----
-----.

②·③ (생략)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의 소집을 <u>요구</u>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실비보상)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u>회의 참석 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포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활동지원) ① ----- ----- ----- <u>요구할</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비보상) ----- ----- <u>범위에서</u> <u>회의 참석수당</u>----- -. 제10조(사기진작) ----- ----- <u>범위</u>----- ----- -----.
--	---

개 정 이 유

- 2009년 6월 16일 제정 이래 유명무실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안 제3조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3조제2항)
- 위원은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안 제4조제1항)
- 위원은 사회단체 회원 6명, 전직 의회의원 15명으로 위촉(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1월 5일

정선군 조례 제2390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제목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군에 가진 경우를 관내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로 구분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그 주소

제5조제2항제2호 중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산모의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소재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분묘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득한 자는”을 “받은 사람은”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을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자격은 사망일 기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로, “사항에 의하여”를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30년 이상 군에 주소가 되어 있던 사람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신청일)”을 “신청일을 말한다)”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안치된 자”를 “안치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를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로, “때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인에게”를 “다른 사람에게”로, “때때하였을 때”를 “때때한 경우”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아니하였을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설치하였을 때”를 “설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필요한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법 제20조에 준하여”를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3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환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의 철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수탁자가”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를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관련법령”으로, “위반 하였을”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판단되는”을 “판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하였을”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을 “부적당하다고

인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과”를 “제1항 및”으로, “1월전에 제9조에 의한”을 “1개월 전에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타”를 “그 밖의”로, “반환하여야”를 “되돌려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불하며”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로,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받은 자”를 “받은 사람”으로,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를 “제7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른”으로, “취소일로부터 1월”을 “취소일부터 1개월”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표5와”를 “별표 7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매장 하여야”를 “매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1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 장사시설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장사시설 사무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2조 관련)

법 률 명	대 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별표 2]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공설화장시설	정선 하늘터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연장 사용료
			정선군민	기타 지역주민	
공설묘지 (정선하늘공원)	매장분묘	단장(6.3㎡)	923,000	-	300,000
		합장(8.1㎡)	1,200,000	-	390,000
	봉안묘(12기 : 10㎡)		1,476,000	-	480,000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유연유골 (15년)	개인단	300,000	1,000,000	300,000
		부부단	500,000	1,500,000	500,000
	무연유골(10년)		150,000	300,000	-
공설화장시설 (정선하늘터)	대인(만15세이상)1구당		100,000	700,000	
	소인(만15세미만)1구당		8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50,000	300,000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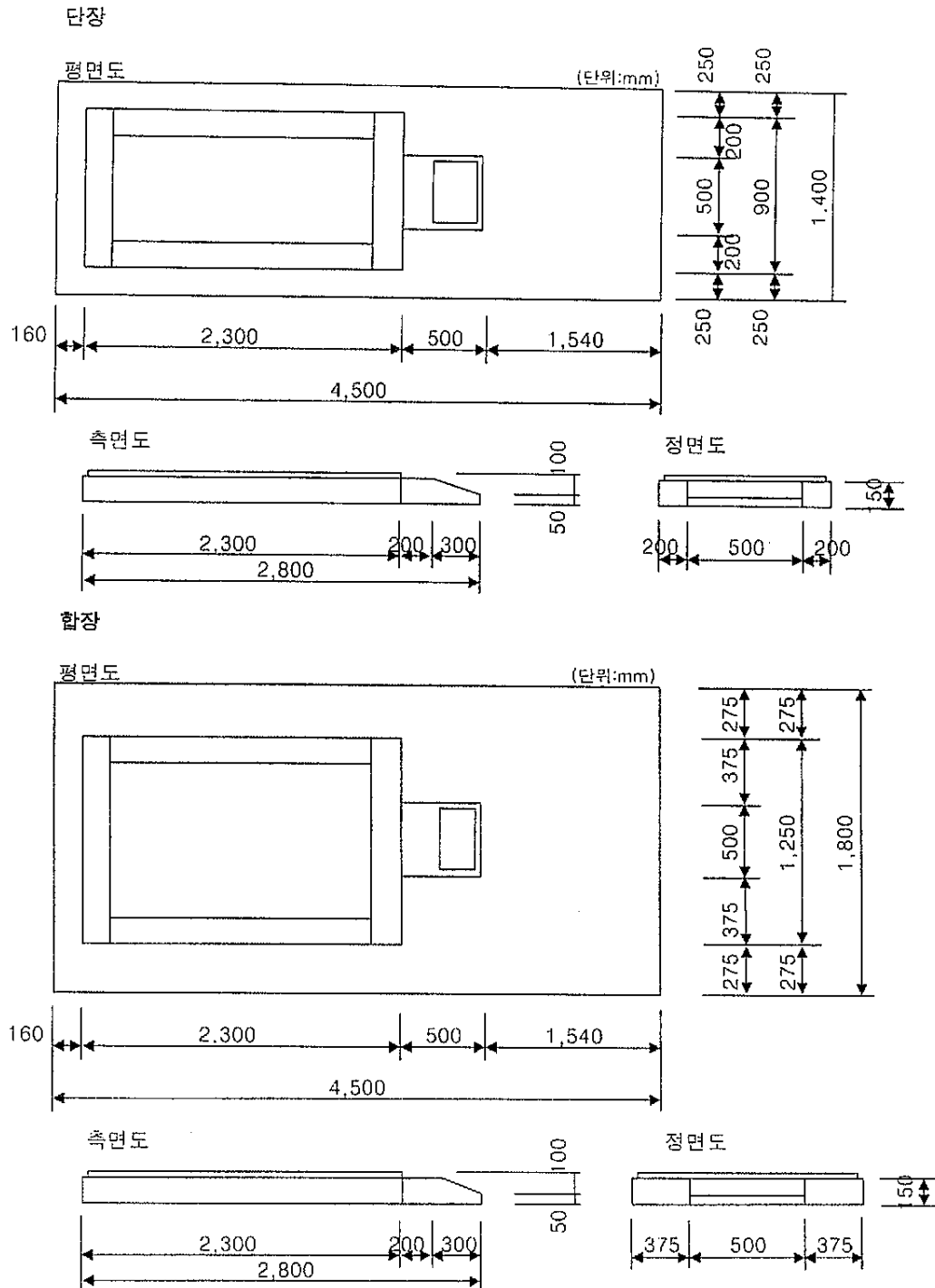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
(제9조제5항, 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사용기간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비고
	정선군민			정선군민		기타지역주민		
	매장분묘		봉안묘 (12기 : 10㎡)	유연유골(15년)				
	단장 (6.3㎡)	합장 (8.1㎡)		개인단	부부단	개인단	부부단	
	923	1,200	1,476	300	500	1,000	1,500	기납부액
1일 이상 5년 미만	550	720	880	180	300	600	900	
5년 이상 10년 미만	270	360	440	90	150	300	450	
10년 이상	미환불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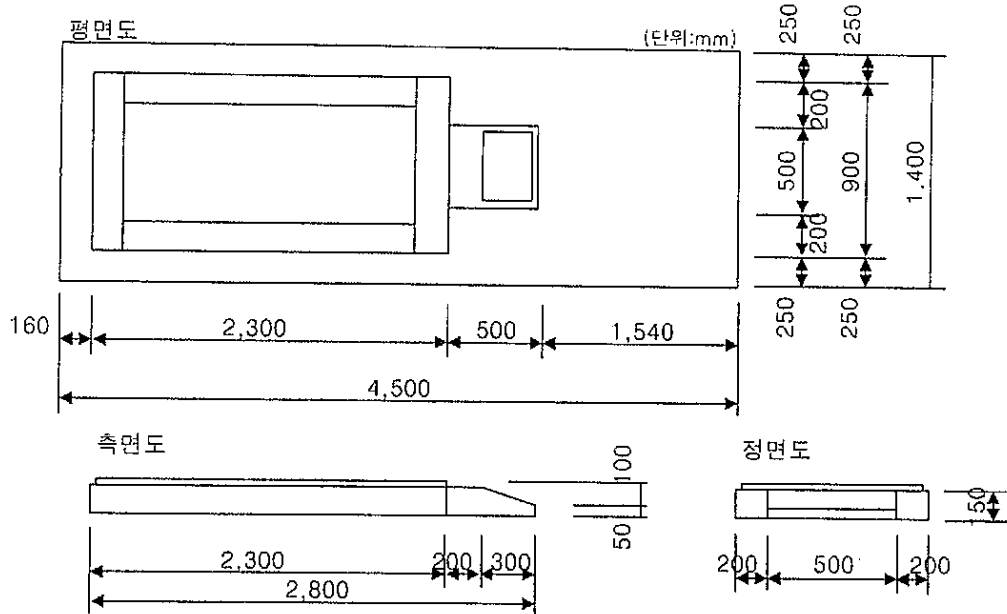
분묘의 규격
(제19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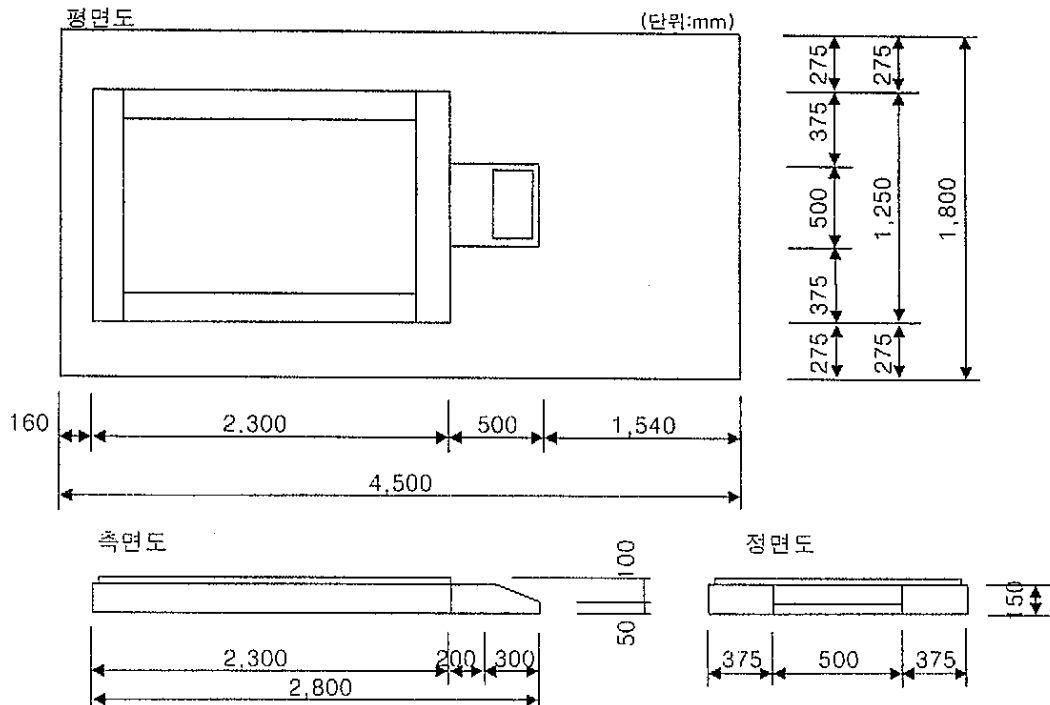
[별표 6]

보안요 시설 규격
(제19조제2항 관련)

단장



합장



[별표 7]

봉안당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시설명	시설기준
봉안안치단	봉안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한다.
유 골 함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① 봉안안치단의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② 유골함의 위패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 ----- 정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의한다. 5.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안치하기 위한 납골시설을 말한다.

7.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묘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8.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으로 별표 6과 같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

제3조(수급계획) ① -----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 수립·시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명칭 및 위치) -----
----- 별표 2와 ---.

제5조(사용허가 등) ① -----
-----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시 관내, 관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 .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군에 가진 경우를 관내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로 구분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그 주소

2. -----
-- 산모의 주소

3. -----
----- 소재지

4. -----
----- 분묘의 소재지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른-----
----- 받은 사람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2.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 유골은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자의 가족 유골 및 납골을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해야-- ----.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자격은 사망일 기준 -- 사람으로 -. ----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 바에 따라-----
-----.

1.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30년 이상 군에 주소가 되어 있던 사람

② 제1항-----

신청일을 말한다) -----
---- 주소를 가진 사람-----

안치된 사람-----
-----.

③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선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정선 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
----- 제1항-----

-----.

④ -----

-----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 경우에는 -----
-----.

1. -----
다른 사람에게 ----- 매매한 경우
2. -----
- 위반한 경우
3. ----- 날부터-----
----- 아니한 경우
4. -----

-----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
였을 때
7.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
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8.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
여 필요한 때
9.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
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5. 거짓 -----
----- 받은 경우

6. -----
----- 설치한
경우

7. -----
----- 인정
된 경우

8. -----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
-----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때에는 법 제20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 -----
----- 별표 3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
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납입 후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환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른-----

----- 제출해야-----
-----.

⑤ ----- 사람은 -----

-----.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3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사용자

----- 경우-----

----- 신고해야---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장제한) -----

----- 사람은 -----

-. -----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

자”라 한다)과 -----

정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

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

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철회 등) ① 군수

는 수탁자가 -----

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
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의 취소 결정일
1월전에 수탁자에게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
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
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
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 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

----- 경우에는 위탁을 철
회-----.

1. 관련법령-----
----- 위반한-----

2. 위탁운영-----
----- 판단된-----

3. -----

----- 발생한-----

4. 그 밖에 -----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제17조(지도·감독) ① -----
----- 위탁
운영-----
-- 그 밖의 -----

응해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 -----

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 (생 략)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합장)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매장자는 제7조

--- 별표 5와 --.

② -----

----- 별표 6과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
----- 1개월 전
에 제9조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

----- 사람이 -----

----- 그 밖의 -----

----- 되돌려 받아야 .

② -----

----- 되돌려 주
어야 하며-- 별표 4의 장사시설
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
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합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받은
사람 ----- 제7조제1항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5조(사용기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에 따른다.

④ -----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
-----.

제23조(개장명령) ① ----- 제8조에 따른-----

-- 취소일로부터 1개월 -----
----- 알려야---- --.

② ----- 제1항에 따른----- --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

③ ----- 따른 -----

--.

제24조(시설기준) -----

----- 별표 7과 --.

제25조(사용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개월 전-

1월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된 무연유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내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 사용장소의 반환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해야-- ---.

④ ----- 제21조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봉안당 이용 중단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해지시 합리적으로 환불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용료 환불 등 개정(안 제9조제4항, 안 제21조제2항)
-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제정(안 제9조제5항)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1월 5일

정선군 조례 제2391호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녀 각각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녀 각각 1명을 -----.

개 정 이 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정선군 지역사회통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인원 및 성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1항)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4-93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로 부터 승인받은 2013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2.

정 선 군 수**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1. 결산개황**

회계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397,947,598,386	404,929,419,770	319,647,165,025	85,282,254,745
일 반 회 계	364,146,003,436	370,248,303,896	291,884,591,574	78,363,712,322
특 별 회 계	33,801,594,950	34,681,115,874	27,762,573,451	6,918,542,4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40,566,000	9,879,401,096	8,894,517,990	984,883,106
기 타 특 별 회 계	24,261,028,950	24,801,714,778	18,868,055,461	5,933,659,31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5,806,000	636,568,740	608,227,521	28,341,219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4,842,204,000	4,866,096,498	4,118,494,230	747,602,268
동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79,840,000	178,353,574	94,476,320	83,877,254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33,397,000	53,199,374	18,527,200	34,672,174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39,994,000	341,906,650	151,146,800	190,759,850
주택사업특별회계	250,648,000	280,170,654		280,170,654
주차장특별회계	645,555,000	683,675,379	300,036,600	383,638,779
수질개선특별회계	17,233,584,950	17,761,743,909	13,577,146,790	4,184,597,119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합	계	397,947,598,386	411,043,234,720	404,929,419,770	6,113,814,950
일	반 회 계	364,146,003,436	375,369,916,300	370,248,303,896	5,121,612,404
특	별 회 계	33,801,594,950	35,673,318,420	34,681,115,874	992,202,54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40,566,000	10,336,036,021	9,879,401,096	456,634,925
	기 타 특 별 회 계	24,261,028,950	25,337,282,399	24,801,714,778	535,567,621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635,806,000	642,788,740	636,568,740	6,220,00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4,842,204,000	4,874,816,498	4,866,096,498	8,720,00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79,840,000	178,353,574	178,353,574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133,397,000	53,199,374	53,199,374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39,994,000	341,906,650	341,906,650	
	주택사업특별회계	250,648,000	280,170,654	280,170,654	
	주차장특별회계	645,555,000	1,094,313,984	683,675,379	410,638,605
	수질개선특별회계	17,233,584,950	17,871,732,925	17,761,743,909	109,989,016

나. 세출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354,155,714,000	397,947,598,386	319,647,165,025	51,007,923,120	27,292,510,241
일 반 회 계	325,178,877,000	364,146,003,436	291,884,591,574	48,550,152,810	23,711,259,052
특 별 회 계	28,976,837,000	33,801,594,950	27,762,573,451	2,457,770,310	3,581,251,1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28,266,000	9,540,566,000	8,894,517,990	132,600,000	513,448,010
기 타 특 별 회 계	19,448,571,000	24,261,028,950	18,868,055,461	2,325,170,310	3,067,803,179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635,806,000	635,806,000	608,227,521		27,578,479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4,842,204,000	4,842,204,000	4,118,494,230		723,709,77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79,840,000	179,840,000	94,476,320		85,363,680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133,397,000	133,397,000	18,527,200		114,869,8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39,994,000	339,994,000	151,146,800		188,847,200
주택사업특별회계	250,648,000	250,648,000			250,648,000
주차장특별회계	645,555,000	645,555,000	300,036,600		345,518,400
수질개선특별회계	12,421,127,000	17,233,584,950	13,577,146,790	2,325,170,310	1,331,267,850

다. 기능별·성질별 현황

(1) 일반회계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계	수납금액	비율	계	지출금액	비율	
	370,248,303,896	100		291,884,591,584	100	
1. 지방세	32,339,349,280	8.73	기능별	1. 일반공공행정	24,538,167,841 8.41	
보통세	32,199,728,320	8.70		2. 공공질서및안전	15,597,903,770 5.34	
지난년도수입	139,620,960	0.03		3. 교육	4,020,054,602 1.38	
2. 세외수입	84,974,303,126	22.95		4. 문화및관광	28,617,269,603 9.80	
재산임대수입	521,627,720	0.14		5. 환경보호	21,048,900,373 7.21	
사용료수입	3,958,328,158	1.07		6. 사회복지	39,009,480,937 13.36	
수수료수입	694,960,670	0.19		7. 보건	5,095,758,900 1.75	
사업수입	9,515,926,760	2.57		8. 농림해양수산	48,041,366,510 16.46	
징수교부금	617,404,470	0.17		9. 산업.중소기업	2,784,124,100 0.95	
이자수입	1,550,800,298	0.42		10. 수송및교통	10,545,913,690 3.61	
재산매각	1,116,150,820	0.30		11. 국토및지역개발	52,431,003,226 17.96	
잉여금	20,162,299,740	5.45		12. 예비비	0 0.00	
이월금	40,264,387,436	10.87		13. 기타	40,154,648,022 13.76	
전입금	3,500,000,000	0.95		성질별	1. 인건비	35,361,137,465 12.11
융자금원금수입	154,691,610	0.04			2. 물건비	17,782,911,162 6.09
부담금	175,000,000	0.05			3. 경상이전	73,139,827,520 25.06
잡수입	2,418,711,916	0.65			4. 자본지출	154,614,717,535 52.97
지난년도수입	324,013,528	0.09			5. 보전재원	4,250,000,000 1.46
3. 지방교부세	139,091,280,000	37.57			6. 내부거래	5,620,151,000 1.93
4. 재정보전금	5,654,451,000	1.53			7. 예비비및기타	1,115,846,892 0.38
5. 보조금	108,188,920,490	29.22				
국비보조금	68,188,020,490	18.42				
도비보조금	40,000,900,000	10.80				

(2)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비 고
합 계	33,801,594,950	34,681,115,874	27,762,573,4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40,566,000	9,879,401,096	8,894,517,990	
기타특별회계	24,261,028,950	24,801,714,778	18,868,055,4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5,806,000	636,568,740	608,227,521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4,842,204,000	4,866,096,498	4,118,494,23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79,840,000	178,353,574	94,476,32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33,397,000	53,199,374	18,527,2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39,994,000	341,906,650	151,146,800	
주택사업특별회계	250,648,000	280,170,654		
주차장특별회계	645,555,000	683,675,379	300,036,600	
수질개선특별회계	17,233,584,950	17,761,743,909	13,577,146,790	

3. 군민 부담 상황

가. 세목별 군세 징수현황

(단위:원)

세목별	징수목표액 ㉠	부과액 ㉡	징수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액 ㉡-(㉢+㉣)
계	30,801,668,000	34,387,539,290	32,339,349,280	356,781,020	1,691,408,990
주 민 세	368,000,000	415,067,290	390,383,710	540,750	24,142,830
재 산 세	5,193,786,000	5,570,971,150	5,358,428,420	13,732,590	198,810,140
자 동 차 세	4,475,682,000	5,269,279,760	4,963,345,800	996,800	304,937,160
담배소비세	4,014,200,000	4,167,272,300	4,167,272,300		
지방소득세	16,500,000,000	17,438,610,550	17,320,298,090	27,426,080	90,886,380
지난년도수입	250,000,000	1,526,338,240	139,620,960	314,084,800	1,072,632,480

나. 군세 부담액 현황

(단위:원,명,세대)

군민1인당 부 담 액	세대당 부담액	인구수 및 세대수		비 고
		인구수	세대수	
808,403	1,676,048	40,004	19,295	

4. 채권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13년 운용상황		당해연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6,611,997,381	556,160,500	2,094,750,711	5,073,407,170
일반회계	3,570,046,760			3,570,046,760
특별회계	2,708,355,671	539,832,270	2,091,750,711	1,156,437,230
기 금	333,594,950	16,328,230	3,000,000	346,923,180

5. 채무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13년 운용상황		당해연도말 ㉠+㉡-㉢
		발생액㉡	소멸액㉢	
일반회계	16,038,000,000	0	4,250,000,000	11,788,000,000

6. 기금 운용 상황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	34,895,460,964	1,802,421,846	2,616,830,836	814,408,990	36,697,882,810
사 회 복 지 기 금	3,901,636,356	50,849,651	145,849,651	95,000,000	3,952,486,007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	318,860,976	40,836,833	48,836,833	8,000,000	359,697,809
청 사 건 립 기 금	22,620,173,135	1,438,199,077	1,438,199,077		24,058,372,212
농 업 농 촌 발 전 안 전 기 금	7,121,720,069	506,709,000	506,709,000		7,628,429,069
재 난 관 리 기 금	799,197,589	-231,423,095	458,175,905	689,599,000	567,774,494
식 품 진 흥 기 금	133,872,839	-2,749,620	19,060,370	21,809,990	131,123,219

7. 공유재산 및 물품 상황

가. 공유재산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12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증㉡	감㉢	
계		829,589,136,730	271,526,492,512	1,207,229,178	1,099,908,400,064
행정 재산	소 계	476,878,451,256	254,111,681,622	91,078,358	730,899,054,520
	공 용 재 산	152,428,090,545	353,738,255		152,781,828,800
	공 공 용 재 산	315,993,485,959	253,122,107,478	91,078,358	569,024,515,079
	기업용재산	8,446,380,625	635,835,889		9,082,216,514
	보 존 재 산	10,494,127			10,494,127
일 반 재 산		352,710,685,474	17,414,810,890	1,116,150,820	369,009,345,544

나. 물 품

(단위:개, 원)

정수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물품 증·감 실적				당해연도말 보유액 ㉠+㉡-㉢	
	건수	금액	취득㉡		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	405	4,771,821,090	19	200,921,000	22	29,562,090	402	4,943,180,000

8. 공기업 운영현황(상수도사업)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13년도(당기)	2012년도(전기)	
1. 유동자산	1,663,645,360	1,553,111,530	110,533,830
가. 당좌자산	1,629,916,950	1,511,342,890	118,574,060
○ 현금예금	1,011,995,866	1,153,248,450	△141,252,584
○ 대손충당금	330,717,765	358,094,440	△27,376,675
나. 재고자산	33,728,410	41,768,640	△8,040,230
○ 저장품	33,728,410	41,768,640	△8,040,230
2. 비유동자산	45,362,542,636	46,272,699,482	△910,156,846
가. 투자자산	324,000	324,000	0
나. 가동설비자산	43,024,744,759	45,150,157,432	△2,125,412,673
다. 비가동설비자산	2,187,240,727	781,799,300	△1,405,441,427
라. 무형자산	150,233,150	340,418,750	△190,185,600
자 산 총 계	47,026,187,996	47,825,811,012	△799,623,016
1. 유동부채	27,112,760	51,003,560	△23,890,800
가. 예수금	27,112,760	39,622,150	△12,509,390
나. 미지급비용	0	11,381,410	△11,381,410
2. 고정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7,112,760	51,003,560	△23,890,800
1. 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가. 원시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2. 자본잉여금	43,516,496,228	51,412,197,218	△7,895,700,990
가. 국고보조금	6,412,340,000	6,412,340,000	0
나. 도비보조금	1,309,694,000	1,309,694,000	0
다. 타회계보조금	29,772,360,800	29,072,360,800	700,000,000
라. 시설분담금	1,186,063,800	1,186,063,800	0
마. 원인자부담금	724,166,650	676,000,000	48,166,650
바. 재평가적립금	0	8,831,427,200	△8,831,427,200
사. 기부금	4,111,870,978	3,924,311,418	187,559,560
3. 결손금	2,523,789,965	9,643,758,739	△7,119,968,774
자 본 총 계	46,999,075,236	47,774,807,452	△775,732,216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13년도(당기)	2012년도(전기)	
1. 영업수익	7,408,882,523	6,636,291,990	772,590,533
가. 급수수익	7,246,873,523	6,352,941,070	893,932,453
나. 급수공사수익	159,676,000	175,340,000	△15,664,000
다. 원정수판매수익	0	96,112,520	△96,112,520
라. 기타영업수익	2,333,000	11,898,400	△9,565,400
2. 영업비용	9,670,708,600	9,301,658,302	369,050,298
가. 원수및취수비	0	379,729,380	△379,729,380
나. 정수비	2,196,874,540	2,578,337,030	△381,462,490
다. 배급수비	50,456,270	306,699,800	△256,243,530
라. 일반관리비	391,336,480	746,318,290	△354,981,810
마. 징수및수용가관리비	0	218,448,490	△218,448,490
바. 대행운영관리비	3,948,661,370	1,872,500,000	2,076,161,370
사. 급수공사비	187,559,560	184,377,730	3,181,830
아. 감가상각비	2,679,700,810	2,779,868,262	△100,167,452
자. 대손상각비	25,933,970	28,013,720	△2,079,750
차. 무형자산상각비	190,185,600	189,365,600	820,000
3. 영업손실	2,261,826,077	2,665,366,312	△403,540,235
4. 영업외수익	614,809,098	229,851,782	384,957,316
가. 이자수익	10,526,324	29,772,142	△19,245,818
나. 타회계전입금수익	0	0	0
나. 타회계지원금수익	600,000,000	200,000,000	400,000,000
다. 기타영업외수익	4,282,774	79,640	4,203,134
5. 영업외비용	75,822,857	0	75,822,857
가. 운휴자산감가상각비	68,296,677	0	68,296,677
나. 전기오류수정손실	7,526,180	0	7,526,180
6. 당기순손실	1,722,839,836	2,435,514,530	△712,674,694

정선군고시 제2014-9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국가암추센터 부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측량결과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적등록전환 및 면적정정사항이 있어 분할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국가암추센터 부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32-1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변경)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국가암추센터	북평면 북평리 332-1대 일원	55,480	감)48	55,432	정선군 고시 제2014-72호 (2014.08.14)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국가암추센터	면적 변경 - 55,480㎡→55,432㎡ 감) 48㎡	국가암추센터 부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측량결과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적등록전환 및 면적정정사항이 있어 분할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국가암추센터 부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 고
①	국가암추센터 (연구시설)	20%이하	50%이하	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정선군고시 제2014 - 97호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변경·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승인고시

1.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변경·공원계획(변경)을 결정 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생태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03일

정 선 군 수

가. 지정목적 : 정선읍 북설리 병방치 일원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군립공원 조성으로 우수한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산 111번지 일원

다.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 변경·공원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라.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정선군청 생태환경과 비치)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 변경·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병방산 군립공원 구역 변경·공원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구역 변경·공원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공 원 명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공 원 관 리 청	구 역 내 주요자원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병 방 산 군립공원	자연공원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산111번지 일원	488,051	증)12,580	500,631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2011.09.30)	정선군	별지참고	

나. 공원구역 변경 조서

1) 공원구역 변경 경계조서

가) 공원경계 총괄조서

구 분	필지수(개)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병 방 산 군립공원	57	증) 18	75	488,051	증)12,580	500,631	100.0	

나) 소유자별 조서

구 분	필지수(개)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57	증) 18	75	488,051	증)12,580	500,631	100.0	
국유지	5	증) 1	6	32,820	증)1,285	34,105	7.0	
공유지	17	증) 16	33	336,504	증)15,261	351,765	69.8	
사유지	35	증) 1	36	118,727	감)3,966	114,761	23.2	

다) 지목별 조서

구 분	필지수(개)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57	증) 18	75	488,051	증) 12,500	500,631	100.0	
전	31	증) 6	37	55,715	증) 7,184	62,899	12.6	
임	21	증) 8	29	418,165	감) 6,494	411,671	82.2	
도	4	-	4	13,197	감) 7	13,190	2.6	
공	1	증) 2	3	974	증) 1,506	2,480	0.5	
대	-	증) 1	1	-	증) 3,076	3,076	0.6	
잡	-	증) 1	1	-	증) 7,315	7,315	1.5	

2)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88,051	증) 12,580	500,631	100.0	
공 원 자 연 보 존 지 구	125,000	-	125,000	25.0	
공 원 자 연 환 경 지 구	276,606	증) 13,129	289,735	57.9	
공 원 마 을 지 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86,445	감) 549	85,896	17.2	

3) 공원마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6,445	감) 549	85,896	100.0	
공공시설	337	감) 261	76	0.1	
교통/운송시설	10,045	증) 2,495	12,540	14.6	
휴양/편익시설	9,166	감) 4,955	4,211	4.9	
숙박시설	15,600	증) 144	15,744	18.3	
녹지 및 기타	51,297	증) 2,028	53,325	62.1	

나) 광하리 지구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1,849	증) 1,290	43,139	100.0	
공공시설	124	감) 124	-	0.0	
교통/운송시설	3,078	감) 1,788	1,290	3.0	
휴양/편익시설	-	-	-	0.0	
숙박시설	15,600	-	15,600	36.2	
녹지 및 기타	23,047	증) 3,202	26,249	60.8	

다) 북실리 지구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4,596	감) 1,839	42,757	100.0	
공공시설	213	감) 137	76	0.3	
교통/운송시설	6,967	증) 4,283	11,250	26.3	
휴양/편익시설	9,166	감) 4,955	4,211	9.8	
숙박시설	-	증) 144	144	0.3	
녹지 및 기타	28,250	감) 1,174	27,076	63.3	

4) 용도지구별 세부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면 적(m ²)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488,051	증) 12,580	500,631	100.0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소 계	125,000	-	125,000	100.0	
	공공시설	-	-	-	0.0	
	교통/운송시설	1,523	증) 280	1,803	1.4	도로, 탐방로
	휴양/편익시설	-	증) 38	38	0.0	전망대1
	숙박시설	-	-	-	0.0	
	녹지 및 기타	123,477	감) 318	123,159	98.5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소 계	276,606	증) 13,129	289,735	100.0	
	공공시설	-	-	-	0.0	
	교통/운송시설	14,430	증) 14,329	28,759	9.9	도로, 보행로, 주차장, 로프웨이 하차장
	휴양/편익시설	596	증) 3,497	4,093	1.4	짚와이어 하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	-	-	0.0	
	녹지 및 기타	261,580	감) 4,697	256,883	88.7	
공원 마을 지구	소 계	86,445	감) 549	85,896	100.0	
	광하리지구	41,849	증) 1,290	43,139	100.0	
	공공시설	124	감) 124	-	0.0	
	교통/운송시설	3,078	감) 1,788	1,290	3.0	로프웨이 상차장
	휴양/편익시설	-	-	-	0.0	
	숙박시설	15,600	-	15,600	36.2	친환경숙박시설
	녹지 및 기타	23,047	증) 3,202	26,249	60.8	
	북설리지구	44,596	감) 1,839	42,757	100.0	
	공공시설	213	감) 137	76	0.3	매표소
	교통/운송시설	6,967	증) 4,283	11,250	26.3	도로, 탐방로, 주차장, 로프웨이 상차장
	휴양/편익시설	9,166	감) 4,955	4,211	9.8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공중화장실, 전망대2
	숙박시설	-	증) 144	144	0.3	휴게음식점
	녹지 및 기타	28,250	감) 1,174	27,076	63.3	

2.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원계획 총괄도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	488,051	증) 12,580	500,631	
공공 시설	매표소	기정:3개소 변경:1개소 감)2개소	337	감) 261	76	
교통 및 운송 시설	도로(탐방로포함)	-	15,179	증) 949	16,128	폭:2~6m
	주차장	기정:3개소 변경:5개소 증)2개소	8,132	증) 6,229	14,361	
	로프웨이 (구 승강장)	-	2,687	증) 9,926	12,613	
휴양 및 편의 시설	짚와이어	-	8,529	감) 3,775	4,754	
	휴게소	1개소	596	감) 571	25	
	스카이워크	1개소	340	감) 30	310	
	공중화장실	기정:2동 변경:1동 감)1동	297	감) 175	122	
	전망대	신설:2개소	-	증) 91	91	
	야영장	신설:1개소	-	증) 3,000	3,000	
	창고	신설:1개소	-	증) 40	40	
숙박 시설	친환경숙박시설	1동	15,600	증) -	15,600	
	휴게음식점	신설:3개소	-	증) 144	144	
녹지 및 기타	녹 지	-	436,354	감) 2,987	433,367	

나. 건축 및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	488,051	증) 12,580	500,631	-	-	-	-	
공공시설	소 계	-	337	감) 261	76	-	-	-	-	
	매포소1(곤돌라)	1층 1동	137	감) 137	0					
	매포소2(곤돌라)	1층 1동	124	감) 124	0					
	매포소3(스카이워크)	1층 1동	76	0	76	기정:13.00 변경:20.00 증)7.00	기정:13.00 변경:20.00 증)7.00	기정:17.10 변경:26.30 증)9.20	기정:17.10 변경:26.30 증)9.20	
교통및운송시설	소 계	-	25,998	증) 17,104	43,102	-	-	-	-	
	도로(탐방로포함)	-	15,179	증) 949	16,128	-	-	-	-	
	주차장1	-	5,008	증) 1,816	6,824	-	-	-	-	
	주차장2	-	1,367	증) 3,385	4,752	-	-	-	-	
	주차장3	-	1,757	감) 208	1,549	-	-	-	-	
	주차장4	-	-	증) 778	778					
	주차장5	-	-	증) 458	458					
	로프웨이1(구승강장1)	-	1,251	증) 2,606	3,857	1,126.52	2,072.06	29.20	53.72	
휴양및편의시설	로프웨이2(구승강장2)	-	1,436	증) 7,320	8,756	802.88	1,022.73	9.16	11.68	
	소 계	-	9,762	감) 1,420	8,342	-	-	-	-	
	짚와이어	-	8,529	감) 3,775	4,754	기정:912.00 변경:885.07 감)26.93	기정:912.00 변경:885.07 감)26.93	기정:10.70 변경:18.61 감)26.93	기정:10.70 변경:15.29 감)4.59	
	휴게소	-	596	감) 571	25	-	-	-	-	
	스카이워크	-	340	감) 30	310	-	-	-	-	
	공중화장실1	1층 1동	172	감) 172	0					
	공중화장실2	1층 1동	125	감) 3	122	19.00	19.00	15.20	15.20	
	전망대	-	-	증) 91	91	-	-	-	-	
숙박시설	야영장	-	-	증) 3,000	3,000	-	-	-	-	
	창고	-	-	증) 40	40	-	-	-	-	
	소 계	-	15,600	증) 144	15,744	-	-	-	-	
	친환경숙박시설	2층 1동	15,600	0	15,600	기정:2,367.00 변경:2,028.00 감)339	기정:3,765.00 변경:3,114.00 감)651	기정:15.20 변경:13.00 감)2.20	기정:24.10 변경:19.96 감)4.14	
녹지및기타	휴게음식점	-	-	증) 144	144	45.00	45.00	31.25	31.25	
	소 계	-	436,354	감) 2,987	433,367	-	-	-	-	
	녹지	-	436,354	감) 2,987	433,367	-	-	-	-	

다 도로조서(전체)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합계					16,128			
폐지	소로	3	3	4	210	735	서비스	소 3-2	짚와이어 승강장
폐지	소로	3	4	4	240	840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폐지	소로	3	5	2	250	375	서비스	소 3-3	곤돌라 승강장
폐지	소로	3	6	2	80	120	서비스	곤돌라 승강장	소 3-1
폐지	소로	3	8	3~4	10	35	서비스	곤돌라 하차장	모평문화공원
폐지	소로	3	9	6	40	240	진입로	모평문화공원	숙박시설
기정	소로	3	1	5~6	1,880	10,798	진입로	북측지구계	소3-2
변경	소로	3	1	5~6	1,955	11,621	진입로	북측지구계	소3-7
기정	소로	3	2	4	7	26	서비스	주차장3	소3-1
기정	소로	3	7	3	670	2,010	서비스	소3-5	지구계외곽등산로
변경	소로	3	5	3~4	695	2,527	서비스	소3-1	지구계외곽등산로
신설	소로	3	3	4	271	1,084	서비스	소3-1	지구계외곽임도
신설	소로	3	4	6	20	121	서비스	소3-1	주차장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가. 공원구역 인근 분포도

구 분			명 칭	소 재 지	용도 지구	수량 및 규모	관 리 방 침	비 고
동·식물 자원	식물	특 정 종	털댕강나무	광하리 산1임 일대	보존	1개소	관리요원	특정식물종 Ⅳ등급
			동강할미꽃	광하리 산1-1임 일대	보존	2개소	관리요원	특정식물종 Ⅴ등급
		• 회양목군락 • 굴참나무-회양목군락		광하리 산1임 일대	보존	5개소	관리요원	석회암지 특이식생
	포유류	천연 기념물	수달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330호
		멸종 위기종						Ⅰ 급
			삵	광하리 산1일 일대	보존	-	관리요원	Ⅱ 급
	조류	천연 기념물	황조롱이	북실리 산200임 일대	보존	-	관리요원	323호
	어류	멸종 위기종	가는돌고기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Ⅱ 급
		천연 기념물	어름치	광하리 산251천 일대	보존	-	관리요원	259호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 - 802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봉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정선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우수지)
- 명칭 : 봉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정선군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우수지(우수저류시설) : $A=1,440\text{m}^2$
- 사 업 량 : 우수저류시설 2,180톤, 고지배수로 등 $L=680\text{m}$

4. 사업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11. ~ 2015. 12.**5. 설계도서 등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열람서류

- 설계도서, 지형도면, 기타 관계서류